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30

제출년월일 : 2019년 5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여 보건소 이용자의 이해를 도모하며, 자치구 보건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2015.11.19.)되면서 제14조가 제25조로 이동되어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2012.9.1.)되면서 제42조가 제45조로 이동되어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

다. 결핵환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2016년 7월이후 면제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삭제(안 제2조제2항제3호)

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조항 삽입(안 제3조제2항제8호)

마. 수급자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바. 자치구 보건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항목 삭제(안 별표)

사. 기 발급한 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중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하는 경우 수수료 무료 항목 삽입(안 별표)

아. 강서구민 건강검진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역보건법」 제25조
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3)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해당 없음)
2)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3) 가족정책과 : 성별영향평가(해당 없음)
4) 의약과 : 수수료 산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하고 “규정함을”을 “정함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및 각종 증명

제2조제2항제3호 “항결핵제 보급”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받는다”를 “수납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허위신청)”을 “(거짓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허위신청”을 “거짓신청”으로, “감면 또는 감면받은”을 “감면 받은”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액표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 건강진단 결과서, 진단서 및 각종 증명	가.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나.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다.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액	
	마. 사망진단서	1통	500원	
	바. 결핵진단서	1통	300원	
	사. 그 밖의 사실공부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아.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온라인 발급은 무료
	자. 1통 초과발급	1통	300원	온라인 발급은 무료
2. 유료 접종	가. 간염 나. 장티푸스 다. 신증후군출혈열 라. 인플루엔자	1회분 1회분 1회분 1회분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보건소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3. 검사	가. B형간염 검사 A형간염 검사 C형간염검사	1회 1회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의과 1회 방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수수료액 15,000원 2,000원	
	나. 수질 검사	1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다. 암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1회 1회 1회 1회 1회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라. 골밀도 검사	1회	8,000원	65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및 조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수수료 면제
	마. 강서구민 건강검진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의과 1회 방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수수료액	
	바. 그 밖의 검사	1회	해당 검사 수수료는 해당연도 원가 구매가격(검사시약비+ 재료비)으로 한다. 단,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 이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정함을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시의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② ----------.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1.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및 각종 증명
2. 삭 제	
3. 항결핵제 보급	<삭 제>
4.~5. (생략)	4.~5. (생략)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는다.	③ ---------- 않은 ---------- 관계 법령 ----------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종수급권자 및 2종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삭 제>

수급권자는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감염병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4. ---------- 사람 ----------
5. ~7.(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③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 설>	④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입재활용) ① 삭 제 ②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	제4조(세입재활용) <삭 제>

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 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 3. 우수 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 사업비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6조(거짓신청) 거짓신청----------감면 받은----------.

[별표1]

수수료액표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가. 근로자건강진단서	1통	500원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다.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라.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마.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통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한 경우의 수수료는 "사"항에 "카"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아.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자.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차. 결핵진단서	1통	300원	
	카. 기타 사실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타.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신설>
	파. 1통 초과발급	1통	100원	<신설>

2. 삭제 (1994.12. 1)

[별표]

수수료액표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 건강진단 결과서, 진단서 및 각종 증명	<삭 제>			
	<삭 제>			
	가.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나.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다.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삭 제>			
	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삭 제>
	마.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삭 제>			
	바. 결핵진단서	1통	300원	
	사. 그 밖의 사실공부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아.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온라인 발급은 무료
	자. 1통 초과발급	1통	300원	온라인 발급은 무료

3. 항결핵제 보급	○ 초치료 처방 ○ 재치료 처방	1인 1개월분 “	2,000원 2,000원	
4. 유료접종	가. (삭제 2012.10.10) 나. 간염 다. 장티푸스 라. 유행성출혈열 마. 인플루엔자	1회분 1회분 1회분 1회분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12.10.10.) 다. (삭제 2012.10.10) 라. 보건소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5. 검사	가. B형간염 검사 A형간염 검사 C형간염검사	1회 1회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수수료액 15,000원 2,000원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나. 수질 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신 설>
	다. 암표지자 검사 ·CFP ·CEA ·CA19-9 ·CA125 ·PSA	 1회 1회 1회 1회 1회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라. 골밀도 검사	1회	8,000원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

<삭 제>				
2. 유료접종	가. 간염 나. 장티푸스 다. 산증후군출열 라. 인플루엔자	1회분 1회분 1회분 1회분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보건소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3. 검사	가. B형간염 검사 A형간염 검사 C형간염검사	1회 1회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의과 1회 방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수수료액 15,000원 2,000원	<삭 제>
	나. 수질 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다. 암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1회 1회 1회 1회 1회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라. 골밀도 검사	1회	8,000원	65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 「장애인복지법」에 의

				에 대하여 수수료감면한다.
	<신 설>			
	마. 그 밖의 검사	1회	해당 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원가 구매가격 (검사시약비+재료비)으로 한다. 단,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한 등록장애인 및 조례 제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수수료 면제
	마. 강서구민 건강검진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의과 1회 방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수수료액	
	바. 그 밖의 검사	1회	해당 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원가 구매가격 (검사시약비+재료비)으로 한다. 단,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 이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 성 자

성명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담당 : 행정7급 조송이)
연락처	02-2600-5814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 개정사유

○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과 면제 대상 조항 정비

□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2015.11.19.)되면서 제14조가 제25조로 이동되어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2012.9.1.)되면서 제42조가 제45조로 이동되어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

○ 결핵환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2016년 7월이후 면제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삭제(안 제2조제2항제3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조항 삽입(안 제3조제2항제8호)

○ 수급자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 자치구 보건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항목 삭제(안 별표)

○ 기 발급한 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중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무료 항목 삽입(안 별표)

○ 강서구민 건강검진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안 별표)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과 면제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 가 번 호	2019 - 16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보건행정과	통보(조치)일	2019. 5. 20.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19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조송이	전화번호	02-2600-5814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최은영	전화번호	02-2600-6762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9년 05월 13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9년 05월 20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05월 21일